

공증협회 주요 소식

법무부 주요 지침

❶ 상법 제543조제3항에 따른 제292조 단서의 준용 여부 관련(2009. 7.13.)

☞ 유한회사 관련 규정인 상법 제543조 제3항에서 개정 상법 제292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제543조 제3항은 제292조 조문상 '본문' 또는 '전단'이 아닌 조문 전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개정상법 제292조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에도 개정상법 제292조 단서를 준용하여 정관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이러한 판단은, 개정 상법 제292조가 회사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주식회사와 같이 물적 책임을 지면서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의 설립이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 상법 제543조 제3항의 문언상 그 준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다.

※ 상법 관련 규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❶ 공증인법 및 관련규정 철저 준수 지시(2009.12. 2.)

☞ 공증사무는 분쟁의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국가사무로서, 공증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공증서류가 작성되는 경우, 서류의 효력 여부 나아가서는 국가사무의 신인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무부에서는 공증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공증서류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공증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징계하고 있음.

☞ 특히 2009. 11. 30. 개최된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는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공증담당변호사 1명에 대

해 정직 2월, 징계 전력 있음에도 비대면공증을 하다 적발된 공증담당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1월의 처분을 하는 등 총 71명에 대하여 정직 및 과태료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

☞ 위 징계결과에서 보듯, 법무부의 지속적인 징계와 수차례에 걸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법사실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바, 특히 아래 열거한 위법행위는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빈번하게 징계되고 있음

- ① 공증인이 촉탁(대리)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공증서류를 작성
 - ② 공증인이나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이 된 말미용지를 비치
 - ③ 공증인이나 공증담당변호사의 서명, 날인, 간인을 누락

☞ 2010. 2. 7. 시행될 개정 공증인법은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있는바, 이번 심의에서 2명의 변호사에 대해 처분을 한 것과 같이, 공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증의 신뢰성에 손상을 주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다액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정직, 면직 등의 엄정한 조치를 적극 추구할 예정이니, 각 공증사무소에서는 이 점을 염두하여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법률 개정안 의견 제시

㉠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 의견제출요청에 대한 협회 의견 제시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공증관계 법령상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부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해 온 데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09. 6. 16.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1. 기본 입장

- 공증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일정한 경우에 공정증서에 부여되는 강제집행력에 의하여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증제도는 선진국가로 가는데 필수적인 신뢰사회 조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
- 공증은 국민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증명뿐만 아니라 권리·의무에 관한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촉탁 당사자간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됨.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촉탁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

자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 부여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인감증명제도가 없어진다면,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촉탁이나 각종 신청은 본인이 원칙적으로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촉탁하거나 신청을 하여야 함. 현행 법률상으로는 대리인에 의한 촉탁이나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면 위임사실은 위임장을 공증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고, 위임장을 공증하기 위하여는 대리로 공증을 촉탁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이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임. 즉,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공증촉탁 또는 각종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공증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칠 것임.

- 인감증명제도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에서는 자격사에 의한 확인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관자격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속하는 재산권 설정 이전 변경 등에 한하여 확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해하는 한 공증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대안이 될 수 없음. 이와 달리 만일 유관자격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본인확인 범위를 넓게 보아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유관자격사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이 때의 본인확인 은 고유 의미의 공증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

는 공증제도와 충돌되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임. 미국식 공증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열등한 제도이므로 이를 선진사례로 상정할 수 없음.

- 또한 유관자격사의 본인확인제도는 다른 의미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자격사들에게 맡겨놓은 것을 의미함. 즉, 유관자격사의 본인확인만으로 재산권이전이나 설정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들에게 국민의 재산권을 맡겨놓은 것이거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준 것과 같으며, 극단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자기 소유의 집에 관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사태에 이를 수 있어 큰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됨. 유관자격사의 본인확인이 공증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전에는 더 큰 사회문제를 양산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도리어 인감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현재 행정청에 의한 인감증명제도만큼 신뢰성(안전성)이나 경제성, 편의성을 갖춘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인감증명 제도를 전면폐지하기 보다는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발급과정에서의 용도지정의 강제화, 인감카드제의 도입 및 비밀번호제의 도입 등이 그러한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됨.

- 가사 인감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 대안으로서는 공증제도를 널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한국 공증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임.

2. 공증사무와 관련한 인감증명요구사무의 개선사항에 대한 입장

- 현행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중 행정안전부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 ④항 ‘공정증서 원본 열람 청구’ 내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교부되는 ⑥항 ‘등본 교부 청구’ 등은 이미 공증이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위임의사를 인정하는 등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감증명요구사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⑤항 ‘정본의 교부 청구’는 ‘정본(正本)’이 원본(原本) 전부를 전사(轉寫)한 것으로 원본에 갈음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자칫 강제집행 승낙 의사가 표기된 정본이 당사자 의사 확인의 충분한 검증없이 교부될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집행문이 부여되어 권리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현행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본인의 자필서

명 및 신분증 대조 확인 등으로 본인의사를 중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① 공증인수수료규칙 개정 관련 협회 의견 제시

법무부가 2010. 2. 7.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선서인증의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인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2009. 12. 15.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사서증서 인증료 정액제 추진 관련

- (1) 사서증서의 인증은 단순히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만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없어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것은 인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서에 기재하므로 업무부담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증이 잘못되었을 때 공증인이 민사상 책임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목적가액에 따라 공증인이 직무상 느끼는 부담도 다르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재판수수료에 해당하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도 목적가액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가(訴價)에 따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수수료를 목적가액과 어느 정도 연동시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2) 우리나라의 공증수수료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체로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정도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만, 인증수수료는 목적가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어 고액의 사서증서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난이도나 노력에 비하여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터무니없이 낮은 다른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않고 인증수수료만을 낮추고, 그것도 터무니없이 낮은 의사록의 인증수수료의 수준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3)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150만 원이던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소액의 정액제로 되는 것은 국가사무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할 것입니다.

- (4) 따라서, 규칙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상한액만을 조정하는 합리적 개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협 회 개 정 안

제20조(인증행위) ①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수수료의 배액으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3만원으로 한다.

2. 의사록 수수료 관련(제21조 제2항)

- (1) 법인의사록 중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이사록의 인증 수수료가 똑같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난이도나 그 부담에 있어서 서로 판이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은 6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2009. 5. 28. 개정되어 동일자부터 시행중인 상법 제363조 제5항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됨에 따라 조그마한 규모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의사록의

- 수수료는 현실화하여도 영세한 회사에 대하여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 (2) 따라서, 규칙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 회 개 정 안
제21조(상법상의 정관등의 인증) ① (생략)
②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u>다음 각 호에 의한다.</u>
1. 주주총회 의사록 : 6만원
2. 이사회 의사록 : 3만원

3. 공정증서 수수료 책정 기준 가액 관련

- (1) 공증인수수료규칙의 개정 과정을 돌이켜 보면 1991년 이후 20여 년 동안 수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 하한 기준액을 200만 원 이하로 묶어둔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입니다.
- (2) 따라서 규칙 제2조의 가액 하한 기준액의 상향 및 최대 상한액의 증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협 회 개 정 안	
제2조(법률행위등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본문생략)	
<u>삭제</u>	
500만원까지	2만2천 원
1천만원까지	3만3천 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 원
1천500만원 초과시	4만4천 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u>1천만원</u> 을 초과하지 못함

4. 참여인이나 통역인이 있는 경우 특칙 신설

- (1) 공증을 할 때 참여인이 참여하거나 통역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부담이 3배 이상 가중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제19조의 3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제19조의3(참여인이나 통역인이 있는 경우)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이 참여하거나 통역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증서작성 수수료에 5만원을 가산한다.

5. 계약서 2통을 함께 인증할 때 수수료 특칙 신설

- (1) 당사자가 다수인 계약에 관한 사서 증서를 당사자수 만큼의 똑같은 수의 원본을 한꺼번에 인증할 때에는, 현행 규정으로는 원칙적으로 각 원본에 대하여 독립적인 별개의 사서 증서 인증으로 인정되므로 개별적으로 인증 수수료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제21조의3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따라서 다음과 같이 특칙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제21조의 3(당사자가 2인 이상인 계약서를 2통 이상 인증하는 경우) 당사자가 2인 이상으로서 계약서원본이 당사자 수만큼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동시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1통을 초과하는 통수마다 2만원씩을 가산한다.

공증업무 질의·회신

● 유언 공증 관련(중부종합 법무법인)

▷ 질의내용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증실무 94페이지에는 공증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공정증서와 비밀증서의 경우다라고 기술하여 마치 자필이나 녹음증서 등의 유언은 공증 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1) 유언을 공정증서로 한 경우와 인증서로 한 경우의 구체적 차이점

- ① 대부분의 촉탁인들이 유언공정증서와 인증서의 차이를 질문하는데,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집행력 유무에 따라 명확하게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유언의 경우 증서로 한 경우와 비밀, 녹음, 자필유언을 인증서로 한 경우 인증서는 단순히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 유언취지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지와 인증받은 자필유언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민법 제1091조)?
- ② 효력에는 별 차이가 없다면 증서로 할 경우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자필유언을 요구하는데, 민법 제1066조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언내용은 컴퓨

터로 치고 나머지 주소, 성명, 연월일 등은 자필로 기재하면 효력이 없는 것인지?

- ③ 위의 유언요건을 다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자필이나 녹음 등 유언은 인증대상이 아닌지 여부와 또 대리인에 의한 인증은 유언의 성질상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대상자

- ①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언자는 민법 제1093조에 의거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는데 공증서식에 집행자란이 있기 때문에 통상 지정하고 있는데 서식대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 ②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로는 민법 제1098조에 무능력자와 파산자만 규정(증인처럼 친족이나 이해관계자 등 제한 규정이 없음)되어 있어 실무상으로는 증인 중 한 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1095조에는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다고 규정된 취지로 보더라도 수증자도 유언집행자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짐)?

(3) 증인 결격사유 확인

- 민법 제1072조 규정의 증인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는 1994. 1. 28.자 법무부 업무처리지시에 의거

본적지 구·시·읍·면에 전화로
조회하여 처리하였으나, 2005. 7. 11.
대한공증협회보 제8호 제5면의 질
의·회신 내용에 의거 현재는 증인
이 제출한 기본증명서(개정 전 호적
초본)에 의거 결격사유를 처리하고
있는바, 2008. 1. 1. 호적법 개정 이후
에도 변동이 없는지와 법무부의 처
리지는는 유효한지(현재 어떤 사무
실에서는 조회를 하고 또 어떤 사무
실에서는 질의·회신대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혼선이 있음)?

▶ 회신(2009. 2. 26.)

○ 질의 (1)-① 관련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언의 방식은 증인이 필요한지 여부, 증인의 역할, 작성자 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에 의한 유언인지를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1066조에 따라 작성된 자필증서를 유언자의 촉탁에 의하여 인증하더라도 그 인증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68조에 의한 방식을 모두 갖추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법 제1069조에 의한 유언은 유언은 이를 인증한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내용이 엄봉날인된 상태로 공증인에게 제출되어 엄봉날인 이후에 작성된 부분만이 인증의 대상이 되므로 비밀증서에 인증은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68조의 유언으로 해석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한 인증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 그 인증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68조의 유언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066조에 따른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의 (1)-② 관련

민법 제1066조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을 자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질의 (1)-③ 관련

문서의 내용이 유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증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증으로 인하여 인증대상문서의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보완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증은 증거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인증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질의 (2)-① 관련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식에 유언집행자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집행자란을 삭제하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 질의 (2)-② 관련

유증의 실현은 유언의 이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수증자의 집행행위를 자기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증자에게 유언집행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서울지법 1995. 4. 28. 자 94파8391 결정). 다만, 민법 제1095조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인만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수증자 겸 상속인인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는 위 제1095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3) 관련

개정 전의 호적초본의 증명력은 호적법의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증인결격사유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1994. 1. 28.자 법무부 업무처리지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증인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호적법 개정전의 호적초본으로 확인·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집행문 재도 부여 관련(중부종합 법무법인)

▷ 질의내용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 중 채무자가 퇴직하여 채권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 채권집행을 위한 재도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는 일반채권의 집행 불능 사유와 달라 재도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일단 채권이 전부된 이상 피전부채권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한 재도 불가하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부여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 회신(2009. 2. 26.)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집행문을 재도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4. 28. 자 99그21 결정참조; 이 결정은 본문의 경우와 같은 사유와 같은 무효사유가 없는 재도부여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무효로 된 부분에 한하여 집행문을 채도부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기는 하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집행불능된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도부여할 때 채도부여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전부금소송의 판결문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❶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관련(법무법인 남도종합)

▷ 질의내용

- (1)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촉탁·작성한 후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 (2)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배달증명우편), 기타 승계사유를 입증하였을시에 승계집행문이 가능한지의 여부?
- (3)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양도양수계약의 시점이 변제기일 전과 변제기일 후 모두 승계집행문이 가능하지 아니면 차이점은 무엇인지의 여부?

▶ 회신(2009. 2. 26.)

○ 질의 (1) 관련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를 금지하여

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 질의 (2) 관련

공증인이 승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등 다른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는 집행문 부여기관이 단독으로 부여하지 못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승계사실을 인정할 시 법원의 재판장의 승계집행문부여명령시와 동일한 정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3) 관련

변제기일의 도래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변제기일의 도래여부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❶ 보증인특별법 제4조 관련(법무법인 삼일)

▷ 질의내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면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보증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위임장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1) 공정증서 작성시 반드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2) 공정증서 작성시 보증채무의 최고

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면, 위임장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 작성을 거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된 새로운 위임장을 요구하여 추후 새로운 위임장을 가지고 왔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3) 위 특별법상 근보증이 아닌 일반적인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는바, 일반 보증계약의 경우 위임장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공정증서 작성시 보증채무 최고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회신(2009. 2. 26.)

○ 질의 (1) 관련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보증인보호법 제4조)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법무부 2008. 9. 30.자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관련 지시사항 참조). 이점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질의 (2) 관련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위임장으로 보증의사와 위임의사

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표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위임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최고액을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 (3) 관련

보증계약을 위한 보증인의 위임장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공정증서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 참조 바랍니다.

● 공증수수료 산정 관련(법무법인 일산)

▷ 질의내용

상속분할협의서의 인증을 촉탁받아 그 목적가액을 산정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해당 상속재산은 아파트 분양권(분양계약상 일체의 지위)으로, 피상속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분양권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목적가액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속개시시점 납부되어 있는 계약금 및 중도금만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본 법인은 상속재산이 분양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지위, 즉 분양권이므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목적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속분할협의서 사본의 내용.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	망 조○○
사망일자 :	20○○년 ○월 ○일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래 공동상속인 김○○, 조△△, 조□□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다.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고양시 -----	
-----아파트 ###동 #####호	
- 이상 -	
협의내용	
위 표시 부동산은 김○○의 단독소유로 한다.	
이 협의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들이 기명날인한다.	
20○○년 ○월 ○일	
상속인전원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회신(2009. 2. 26.)

○ 아파트 분양권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공증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공증은 아니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한 아파트 분양권의 처분이 그 내용이라 할 것이고, 아파트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지위의 처분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을 목적가액으로 산정함이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① 등본 교부 등 관련(법무법인 새길)

▷ 질의내용

- (1) 공증인법 제50조(등본의 교부)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속서류의 기준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첨부했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복사해가면서 문서상의 상대방?합의자?주주?임원 등의 인감증명서?위임장을 함께 복사 요청할 경우 해주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개개인별로 복사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 공증촉탁서 부분 중에 촉탁인 대리인 확인란의 표시 부분에 해당되는 신분증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단순히 동그라미나 V로 표시해도 되는지? 촉탁인들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촉탁서상 공증인이 서명할 곳은 공증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맞는지요. 편람책 질의회신부분에서(Page 465) 답변 중 촉탁인 대리인 확인란에 공증 담당 변호사 서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란이란 것이 공증인 서명란이란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촉탁인 확인	주 민 등록증	0	증 인 성 명	
	운 전 면허증	1, 3	증 인 성 명	
	공 무 원 증		면 식 번 호	
	여 권	1, 3		
	영 사 증명서			
주 임		사무장	공 증 인	

▶ 회신(2009.7.31.)

○ 질의 (1) 관련

공증인법상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 제도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만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도 공정증서의 경우를 유추하여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또는 사서증서의 취지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그 부속서류(사서증서사본포함)의 등본의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등본이란 원본전부를 사본한 것을 의미하므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일부 즉, 초본을 교부하든 그 전부 즉, 등본을 교부하든 그것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르며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 건의 공증촉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할 것입니다. 일견 한 묶음의 동일한 부속서류로 보일지라도 분리가 가능하다면 각 개별공증사건별로 해당사건의 부속서류인지 여부

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 관련

귀 회원의 의견과 같이 자유롭게 표기 가능합니다. 또한 촉탁서상 대리인 확인란의 공증인 부분에는 공증담당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공증담당 변호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①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 관련(법무법인 경기일원)

▷ 질의내용

(1) 법원의 공증사무실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또는 문서 송부촉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 공증인법 제5조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 공증인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업무상비밀에 대한 압수거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2조의2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을 받

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공증인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또는 문서 송부촉탁이 있을 경우 공정증서, 인증서, 촉탁서 등 공증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사본 또는 인증등본을 만들어 회신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그렇지 않다면, 검사 및 검찰청장을 제외한 어떤 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사실조회 회신을 거부해야 하는지 여부?

- (2) 유언공증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증인 및 집행자의 신원조회를 등록 기준지에 요청합니다. 신원조회의 결과를 회신 받기 위해 수 시간, 혹은 당일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촉탁인과 참여인이 당 사무실에 방문하는 시간을 맞추기에 어려워합니다. 신원조회의 회신일과 공정증서 작성일에 있어서 허용되는 날짜 간격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신원조회 회신일과 같아야 하는지, 달라도 되는지)?

▶ 회신(2009. 7. 31.)

○ 질의 (1) 관련

공증인은 취급한 공증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취급한 공증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

되고 있고 압수거부도 인정됩니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촉탁은 일반적인 증거조사방법에 불과하므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취급한 공증사건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촉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공증인에게 취급한 공증사건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없는 경우 즉, 촉탁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일 수인이 공동으로 촉탁한 경우라면 촉탁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현재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은 소송관계인이 공증인법상 공증당사자나 그 승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증사건에 관하여 열람이나 부속서류등본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몰라 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공증인은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시켜 직접 증서의 등본이나 부속서류의 등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질의 (2) 관련

공증인은 무효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아니되므로 최소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는 증인이 결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공증협회 대표단 방문



1. 방문목적

- ☞ 대한공증협회가 2005년부터 추진중인 U.I.N.L.(Union Internationale Notariat Latin / 영어식 표기는 International Union of Latin Notaries) 회원국 가입과 관련, 회원국 가입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U.I.N.L 산하 C.C.N.I.(Commission de Coopération Notariale Internationale : 국제공증인협력위원회 / 영어식 표기는 International Notarial Co-operation Commission) 대표단이 협회를 비롯, 법무부, 법원행정처, 공증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소 등 공증업무 유관기관을 방문 후 한국의 공증제도와 현황 등에 대하여 직접 살펴보고, 대한공증협회와 한국의 공증제도가 U.I.N.L 회원국으로서 가입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 진행의 목적
- ☞ C.C.N.I 대표단은 이번 방문조사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C.C.N.I를 비롯 U.I.N.L 산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이사회(General Council)를

거쳐 U.I.N.L 회원국 세계 총회에 대한 공증협회의 회원국 가입 안건을 최종 의안으로 제출, 심의·결정을 진행하기 위한 방문

※ 차기 U.I.N.L 제26차 세계총회는 2010. 10. 모로코에서 개최 예정

2. 방문기간 및 방문단 명단

☞ 방문기간 : 2009. 10. 17.(토) ~ 23.(금) / 단, 공식활동은 19.(월) ~ 21.(수)

☞ 방문단 명단

직위	성명 (연령, 국적)	주요경력
위원장	Jean-Paul DECORPS 장-폴 드코르프 국적 : 프랑스 연령 : 63세	· 프랑스로동공증인위원회 회장(2000) · 프랑스어공증인협회 회장(2002) · 공증서비스개발위원회 회장(2002) · U.I.N.L 산하 유럽위원회 회장(2004)
부위원장	Michel MERLOTTI 미셸 메를로티 국적 : 스위스 연령 : 62세	· 스위스 뇌샤텔공증인의회 회장(1996) · 現 코소보 공증제도 지원 프로그램 스위스 정부 프로젝트 총괄 · 現 U.I.N.L 재무담당 고문
총무	Jean-Pierre KRANTZ 장-피에르 크란츠 국적 : 프랑스 연령 : 55세	· 유럽의회 전문가 공증인 (2004) · 現 프랑스 알자스주 바랭 공증인의회 회장 · 現 U.I.N.L 제정감사위원회 위원장 겸직
위원	Ion MARIN 이언 마린 국적 : 루마니아 연령 : 60세	· 現 루마니아 공증인협회 부회장
아시아 담당	Giuseppe RAMONELLI 쥘세페 라몽델리 국적 : 이탈리아 연령 : 66세	· 로마공증인양성학교 교수 (1978) 및 동 학교 학장(2007) · C.C.N.I 부회장(2005) · U.I.N.L 자문위원회 총무 (2008)

3. 방문기간 중 주요 활동 사항

- (1) U.I.N.L 회원가입 조건의 핵심은 공증인의 독립성 및 협회의 유일성·강제성·독립성 등이 요구되는바, 협회를 비롯한 공증 업무 유관기관 방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인터뷰 및 방문 실사 진행

※ 이 중 공증인의 임기제로 인한 독립성 침해는 회원가입조건의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C.C.N.I측은 결론내린 사항

(2) 방문기간 중 주요 활동 사항

-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등 전반적 국가특징
- 공증감독기관(법무부) 방문 및 인터뷰
- 공증유관기관(법원행정처, 등기소, 대한변호사협회) 방문 및 인터뷰
- 서울 및 지방의 공증사무소에 대한 방문 및 공증업무 현장 실사
- 한국 공증제도의 특징
- 한국 공증인법 중 회원 가입 조건등과 관련된 조문별 구체적 내용
- 공증인의 수 및 각 지역별 현황, 추이
- 대한공증협회의 조직 및 기구
- 공증인의 자격 조건
- 공증인의 사회적 지위 및 언론과의 관계 조사

※ 이번 C.C.N.I의 회원가입 심사 최종보고서는 상기 내용을 주된 골자로 작성

관 예방 등이 완벽히 준비되고 한국의 공증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과 아울러 최대의 환대를 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

- 이번 방문을 통하여 C.C.N.I 대표단은 한국의 U.I.N.L 회원국 가입 승인이 상당히 긍정적임을 표명
- 단, 회원국 가입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대한공증협회에 공증인법상 몇가지 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권고 및 제안을 요청해 올 예정
- 또한 C.C.N.I의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모든 한국 공증 관계법령의 영문판 제공을 요청

4. C.C.N.I 방문 결과

- C.C.N.I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유관기

제3회 공증주간 시행

1. 공증주간 행사 배경

- 우리 사회는 호의에 기초한 사인간 금전 거래가 많은 반면, 증거를 남기는 법문화에 익숙치 못해 사후적 법률분쟁 양산되는 실정
- 공증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 기능을 수행하며, 사인간 거래시 공증을 통해 증거 남기는 문화를 확산시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약속이 지켜지는 신뢰사회 조성
- 공증제도의 활용이 법질서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서 시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법무부와 대한공증협회가 공동주최로 공증주간 행사를 실시하여 적극 홍보
- 예컨대 유언공증의 경우 공증주간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유언장 작성하기 및 유언에 따른 다툼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적극 홍보
- 2007년 7월 제1회 공증주간 개최에 이어, 지난해 제2회 공증주간 부터는 공증주간 일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공증인법 제정일('61. 9. 23.)이 포함된 주간을 공증주간으로 선정하여 대국민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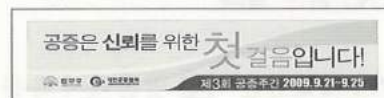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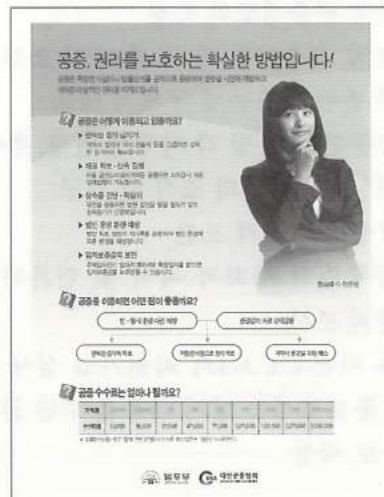
2. 공증주간 기간

○ 2009. 9. 21.(월) ~ 2009. 9. 25.(금)

3. 공증주간 행사주체

○ 법무부와 대한공증협회 공동 주최

4. 공증주간 포스터 및 리플릿, 현수막



5. 공증주간 행사 내용

(1) 공증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대국민 공증 홍보에 역점

- 전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에 관한 무료 민원상담 실시
- 공증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대국민 홍보 실시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부처, 법원·검찰, 국공시립도서관, 변호사회, 법조유관기관 등에 공증제도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부착
- 각 지방법원 청사에 공증주간 안내 현수막 게시방안 협조
- 회원사무소의 현수막 홍보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회원사무소가 속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정절차를 밟아 자체적으로 게시
- 지방자치단체 관할 전자게시판 공증주간 홍보 공익문구 게시 협조

(2) 제3회 공증주간 선포식 등 부대행사는 생략

- 제3회 공증주간의 경우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및 신종플루 유행 등으로 공증주간 첫날 시행하는 선포식 행사 및 공증강연, 명예공증인 겸 홍보대사 이벤트 등 부대행사는 생략

2009년도 협회 주요 회무

(2009. 1. 1. ~ 12. 31.)

○ 2009.1.19. 2009년도 정기총회 개최

- ▶ 의결사항 : ① 2008년도 일반·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 ② 2009년도 일반·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인 ③ 임기만료 선출직 운영위원의 후임 운영위원 선임

▶ 선출 운영위원 :

고영준(제일종합 법인)
김교창(법인 일신)
문영길(법인 동일)
박승서(서초 법인)
송정호(법인 한중)
윤영학(새인전합동)
이윤복(한일합동)
이재성(동아합동)
임채홍(경기합동)
정재현(법인 중부종합)

○ 2009.1.23. 법무부에서 요청한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 현황 송부 요청 관련 의견 회신

○ 2009.2.12. 공증인법 개정법률(9416호) 공포 회원 안내

○ 2009.2.19. 2009년도 제1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공증인법 개정법률에 대한 후속 업무 논의 ② 공증업무 회원 질의·회신 검토 ③ 공증인법 개정

법률 불어 번역 의뢰 ④ 기타 보고서
향

○ 2009.2.26. 공증업무 질의 회신

- ▶ 중부종합 법무법인(유연공증 및 집행문 제도부여 관련)
- ▶ 법무법인 남도종합(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관련)
- ▶ 법무법인 삼일(보증인특별법 제4조 관련)
- ▶ 법무법인 일산(공증수수료 산정 관련)

○ 2009.2.26. 2008년도 및 과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 재납부 안내

○ 2009.3.21. 나세근 법제이사 사임

- ▶ 나세근 법제이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일신의 공증인가 취소에 따른 협회 회원탈퇴 사유로 사임

○ 2009.3.2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감 및 공증제도 T/F 구성 관련 전문가 추천

- ▶ 추천 전문가 : 안원모 총무이사(법무법인 한덕)

○ 2009.5.8. 2009년도 제2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감증명제도 폐지 추진 논의 ② 공증업무 회원 질의 · 회신 검토 ③ 대한공증인협회 조직 변경 준비사항 검토 ④ 기타 보고사항

○ 2009.5.27.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

법(제9746호) 및 공증인법 개정법률(제9750호) 공포 · 시행 회원 안내

○ 2009.6.16. 법무부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 의견제출요청에 대한 협회 의견 회신

○ 2009.6. 24. 2009년도 제3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관련 법무부 요청 사항 논의 ② 공증업무 회원 질의 · 회신 검토 ③ 법무법인 한강의 공증문서 통합보존시설 설치 건의사항 검토 ④ 국제공증협회(U.I.N.L)의 국제공증인협력위원회(C.C.N.I)측 서한 검토 ⑤ 기타 보고사항

○ 2009.7.2. 법무법인 한강의 공증문서 통합보존시설 설치 건의에 대한 협회 의견 회신

○ 2009.7.2. 법무부에 법원의 공증문서 사실조회 요청 등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와의 T/F 구성 요청 공문 발송

○ 2009.7.2. 법무부에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법 및 공증인법 개정법률 업무지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2009.7.10. 2009년도 연회비 납부 및 과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 납부 안내 등

○ 2009.7.29. 2009년도 제4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제3회 공증주간 시행 관련 논의 ② 공증업무 회원 질의·회신 검토 ③ 기타 보고사항
- 2009.7.31. 공증업무 질의 회신
 - ▶ 법무법인 새길(등본교부 등 관련)
 - ▶ 법무법인 경기일원(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 관련)
- 2009.8.19. 서울지방변호사회 403호 및 404호에 대한 협회 사무국 임대 기간 연장(전세, 2년간)
- 2009.8.24. 법무부에 공증주간 관련 선포식 등 행사의 격년제 간소화 시행 건의
- 2009.8.26. 2009년도 제5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제3회 공증주간 시행 관련 논의 ② 운영위원회 개최 논의 ③ 기타 보고사항
- 2009.9.4. 2009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 의결사항 : ① 이사 보궐 선출 ② 공증인가 취소 등에 따른 운영위원 사퇴(법무법인 일신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서울제일 장재형 변호사)추인 ③ 제3회 공증주간 시행 보고 및 선포식 행사 취소 등 논의 ④ 개정 공증인법 시행 관련 협회 후속 업무 진행상황 보고 및 논의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검토
 - ▶ 신임 보궐 이사 : 법제이사 최종길(법무법인 케이씨엘)
- 2009.9.8. 제3회 공증주간 시행 관련 협조 요청
 - ▶ 전 회원에 대국민 무료 법률상담 활동 등 협조 안내
 - ▶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증주간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배포 협조 요청
 - ▶ 서울 소재 법원에 공증주간 홍보현수막 청사 내 시범게시 협조 요청
- 2009.9.21. ~ 25. 제3회 공증주간 시행
- 2009.9.28. 2009년도 공증부책 일괄제작·공급 신청 회원안내
- 2009.9.30. 2009년도 제6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국제공증협회(U.I.N.L) 회원국 가입 심사를 위한 국제공증인 협력위원회(C.C.N.I)측의 협회 방문 관련 논의 ② 기금특별회계 운영 관련 논의 ③ 대한공증협회지 통권 제3호 발간 논의 ④ 기타 보고사항
- 2009.10.9. 2009년도 제7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국제공증협회(U.I.N.L) 회원국 가입 심사를 위한 국제공증인 협력위원회(C.C.N.I)측의 협회 방문 관련 논의 ② 기타 보고사항
- 2009.10.12. 2009년도 제8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국제공증협회(U.I.N.L) 회원국 가입 심사를 위한 국제공증인 협력위원회(C.C.N.I)측의 협회 방문

관련 논의 ② 기타 보고사항

- 2009.10.17.~23. 국제공증협회(U.I.N.I.) 산하 국제공증협력위원회(C.C.N.I.)의 회원국 가입 심사단 협회 등 방문
- 2009.10.26. 2009년도 제9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국제공증협회(UINL) 산하 국제공증인협력위원회(C.C.N.I)측 방문 결과 후속 업무 논의 ② 기타 보고사항
- 2009.11.10.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증업무 방문 인터뷰 공증인 추천
 - ▶ 추천 공증인 : 남상우 회원이사(공증인안산제일합동사무소)
- 2009.11.24. 2009년도 제10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법무부에서 검토중인 공증인수수료 규칙 개정 관련 논의 ②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등 논의 ③ 대한공증협회지 통권 제3호 발간 논의 ④ 기타 보고사항
- 2009.12.15. 법무부에 공증인수수료규칙 개정 관련 협회 의견서 발송
- 2009.12.21. 2009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 의결사항 : ① 2010년도 정기총회 개최 일자 및 의안 등 논의 ② 개정 공증인법 시행 관련 협회 후속 업무 논의

2009년도 회원 가입 · 탈퇴 현황
(2009. 1. 1. ~ 12. 31.)

○ 입회 현황 ○

❖ 법무법인 원

- 인가일 : 2009. 1. 1.
- 대 표 : 윤기원 · 김인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7
신덕빌딩 5층 (137-858)
- 전 화 : 02-3019-2800
- 팩 스 : 02-3019-2801
- 입회일 : 2009. 1. 13.

❖ 법무법인 청구

- 인가일 : 2009. 1. 12.
- 대 표 : 진중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35
영일빌딩 2층 (151-890)
- 전 화 : 02-888-5553, 5663
- 팩 스 : 02-888-5664
- 입회일 : 2009. 1. 14.

❖ 법무법인 지안

- 인가일 : 2009. 2. 16.
- 대 표 : 이명상 · 정진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22
교보타워 A동 4층 (137-885)
- 전 화 : 02-2007-6800, 6810
- 팩 스 : 02-2007-6811
- 입회일 : 2009. 2. 18.

❖ 법무법인 백상

- 인가일 : 2009. 3. 4.
- 대 표 : 이경현 · 박종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24-17
역삼빌딩 3층 (135-753)
- 전 화 : 02-2051-1257, 598-2800
- 팩 스 : 02-598-2801
- 입회일 : 2009. 3. 9.

❖ 법무법인 봄

- 인가일 : 2009. 3. 10.
- 대 표 : 박재승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7
경원빌딩 11층 (135-936)
- 전 화 : 02-3477-2103
- 팩 스 : 02-3477-2975
- 입회일 : 2009. 3. 13.

❖ 법무법인 명성

- 인가일 : 2009. 2. 23.
- 대 표 : 이기형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11-5
1층 (472-933)
- 전 화 : 031-555-7171
- 팩 스 : 031-555-7144
- 입회일 : 2009. 3. 13.

❖ 법무법인 한터

- 인가일 : 2009. 3. 4.
- 대 표 : 김정균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
오피스빌딩 3층 (137-873)
- 전 화 : 02-583-4051~2
- 팩 스 : 02-583-8513
- 입회일 : 2009. 3. 30.

❖ 법무법인 화평

- 인가일 : 2009. 3. 23.
- 대 표 : 강철구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2
우암빌딩 2층 (137-885)
- 전 화 : 02-591-6163~4
- 팩 스 : 02-591-6165
- 입회일 : 2009. 4. 2.

❖ 법무법인 제이원

- 인가일 : 2009. 4. 20.
- 대 표 : 장 원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431-810)
- 전 화 : 031-425-2700
- 팩 스 : 031-425-2733
- 입회일 : 2009. 4. 20.

❖ 법무법인 가인

- 인가일 : 2009. 4. 20.
- 대 표 : 김진욱 · 박세웅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성양빌딩 101호, 301호,
302호 (410-837)
- 전 화 : 031-921-1400, 908-0303
- 팩 스 : 031-921-1404, 908-5432
- 입회일 : 2009. 4. 21.

❖ 법무법인 누리

- 인가일 : 2009. 4. 13.
- 대 표 : 하만영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 3차
빌딩 209호 (431-060)
- 전 화 : 031-387-4925~6

· 팩 스 : 031-387-4927

· 입회일 : 2009. 4. 28.

❖ 법무법인 장백

· 인가일 : 2009. 4. 20.

· 대 표 : 함영업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7
칠보빌딩 1층 (137-885)

· 전 화 : 02-535-4700

· 팩 스 : 02-557-4980

· 입회일 : 2009. 4. 29.

❖ 법무법인 청암

· 인가일 : 2009. 4. 20.

· 대 표 : 도병수 변호사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5-1 중앙빌딩 103호 (330-941)

· 전 화 : 041-569-9011~3

· 팩 스 : 041-569-9061

· 입회일 : 2009. 5. 4.

❖ 법무법인 마천루

· 인가일 : 2009. 4. 27.

· 대 표 : 유병옥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35
서울빌딩 201호 (137-885)

· 전 화 : 02-537-4004

· 팩 스 : 02-537-4401

· 입회일 : 2009. 5. 8.

❖ 법무법인 덕양

· 인가일 : 2009. 5. 14.

· 대 표 : 최원익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9-1 새롭프라자 701호

(412-756)

· 전 화 : 031-967-0708

· 팩 스 : 031-966-6165

· 입회일 : 2009. 5. 15.

❖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 인가일 : 2009. 5. 21.

· 대 표 : 나국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윈타워 2차 201호
(152-848)

· 전 화 : 02-6675-7577

· 팩 스 : 02-6675-7007

· 입회일 : 2009. 5. 21.

❖ 공증인 현영두 사무소 - 소속 제주지검

· 임명일 : 2009. 4. 20.(임기 5년)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2층 (690-825)

· 전 화 : 064-722-1347, 753-0057

· 팩 스 : 064-721-9596

· 입회일 : 2009. 6. 1.

❖ 법무법인 대원

· 인가일 : 2009. 6. 9.

· 대 표 : 하인수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학익2동 270-30
중앙빌딩 6층 (402-867)

· 전 화 : 032-865-3900

· 팩 스 : 032-865-3901

· 입회일 : 2009. 6. 12.

❖ 법무법인 법고를

· 인가일 : 2009. 6. 16.

· 대 표 : 최용석 · 노형삼 변호사

· 소재지 : 울산 남구 옥동 289-12
1~2층 (680-845)

· 전 화 : 052-265-3100

· 팩 스 : 052-258-8787

· 입회일 : 2009. 6. 22.

❖ 공중인 한정화 사무소 - 소속 서울동부지검

· 임명일 : 2009. 6. 8.(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405호 (134-874)

· 전 화 : 02-477-0789

· 팩 스 : 02-477-0749

· 입회일 : 2009. 6. 30.

❖ 법무법인 씨엘

· 인가일 : 2008. 9. 1.

· 대 표 : 최병모 · 이성재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마포구 도화동 22
창강빌딩 1810호 (121-763)

· 전 화 : 02-566-4554, 567-2316

· 팩 스 : 02-568-3439

· 입회일 : 2009. 7. 6.

❖ 법무법인 케이알

· 인가일 : 2009. 8. 18.

· 대 표 : 이창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1
브라운서초 2층 (137-874)

· 전 화 : 02-592-9410

· 팩 스 : 02-592-9414

· 입회일 : 2009. 8. 24.

❖ 법무법인 주원

· 인가일 : 2009. 8. 25.

· 대 표 : 이건개 · 서향희 · 이병철 ·
황정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01호 (135-701)

· 전 화 : 02-6710-0350, 0300

· 팩 스 : 02-6710-0351, 0310

· 입회일 : 2009. 8. 28.

❖ 법무법인(유한) 에이팩스

· 인가일 : 2009. 9. 28.

· 대 표 : 채정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타워 16층 (135-934)

· 전 화 : 02-2018-0855, 0865

· 팩 스 : 02-2018-0850

· 입회일 : 2009. 10. 6.

❖ 법무법인 세현

· 인가일 : 2009. 10. 28.

· 대 표 : 정 윤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 21 511호
(614-031)

· 전 화 : 051-747-1213

· 팩 스 : 051-747-7013

· 입회일 : 2009. 10. 28.

❖ 법무법인 송현

· 인가일 : 2009. 11. 30.

· 대 표 : 김정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2-6
금화빌딩 6~7층 (137-874)

· 전 화 : 02-585-0003, 6080

· 팩 스 : 02-585-6081

· 입회일 : 2009. 11. 30.

❖ 법무법인 비엔에스

- 인가일 : 2009. 11. 27.
- 대 표 : 이동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1
상경빌딩 12층 (135-934)
- 전 화 : 02-556-3387
- 팩 스 : 02-556-3693
- 입회일 : 2009. 12. 3.

❖ 법무법인 정민

- 인가일 : 2009. 6. 9.
- 대 표 : 임홍중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
성도빌딩 7층 (137-874)
- 전 화 : 02-532-2525
- 팩 스 : 02-595-9876
- 입회일 : 2009. 12. 8.

❖ 법무법인 안민

- 인가일 : 2009. 10. 28.
- 대 표 : 박찬중 · 홍선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5-75
해맑은미소빌딩 3~4층
(152-847)
- 전 화 : 02-866-6807
- 팩 스 : 02-866-6854
- 입회일 : 2009. 12. 16.

❖ 법무법인 대현

- 인가일 : 2009. 12. 17.
- 대 표 : 윤기원 · 신치수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분당수 야탑동
360-6 메트로빌딩 701호
(463-828)
- 전 화 : 031-736-0100

- 팩 스 : 031-736-1490

- 입회일 : 2009. 12. 16.

❖ 법무법인 청진

- 인가일 : 2009. 5. 7.
- 대 표 : 이관희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빌딩 502호 (110-733)
- 전 화 : 02-733-4816, 735-5621
- 팩 스 : 02-733-4815, 733-5206
- 입회일 : 2009. 12. 17

○ 회원 탈회 ○

(공증사무소 인가취소)

❖ 법무법인 자하연

- 대 표 : 윤기원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7
신덕빌딩 5층
- 탈퇴일 : 2009. 1. 1.

❖ 법무법인 다울

- 대 표 : 신광옥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 5층
- 탈퇴일 : 2009. 1. 6.

❖ 법무법인 아주

- 대 표 : 김진한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2층
- 탈퇴일 : 2009. 1. 22.

❖ 법무법인 정명

- 대 표 : 장진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
우서빌딩 4층
- 탈퇴일 : 2009. 1. 29.

❖ 법무법인 일신

- 대 표 : 송재현 · 이성룡 · 김규섭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3
우암빌딩 2층
- 탈퇴일 : 2009. 3. 21.

❖ 법무법인 중앙

- 대 표 : 이병호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대한재보험빌딩 5층
- 탈퇴일 : 2009. 5. 6.

❖ 법무법인 일조

- 대 표 : 나국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30
에이스트원타워 2차 201호
- 탈퇴일 : 2009. 5. 15.

❖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 대 표 : 이동열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48-18
- 탈퇴일 : 2009. 5. 15.

❖ 법무법인 성우

- 대 표 : 김찬우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73-1
플래티넘프라자 9층

- 탈퇴일 : 2009. 5. 15.

❖ 법무법인 바른세상

- 대 표 : 임홍중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3
성도빌딩 7층
- 탈퇴일 : 2009. 5. 15.

❖ 공증인 구용완

- 소 속 : 대전지검
- 소재지 : 대전 서구 둔산동 1478
청남빌딩 2층
- 탈퇴일 : 2009. 5. 20.

❖ 법무법인 장백

- 대 표 : 함영업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7
철보빌딩 1층
- 탈퇴일 : 2009. 5. 25.

❖ 법무법인 한라

- 대 표 : 현영두 변호사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이도 2동 1081-3
현곡빌딩 2층
- 탈퇴일 : 2009. 5. 26.

❖ 법무법인 삼영

- 대 표 : 김승열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1-11
푸른 2상호저축은행빌딩 5층
- 탈퇴일 : 2009. 5. 29.

❖ 법무법인 유비

- 대 표 : 김현준 · 구본성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5

청록빌딩 3층

· 탈퇴일 : 2009. 7. 14.

❖ 법무법인 세동

· 대 표 : 손범규 · 임주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2-40
위너빌 4층

· 탈퇴일 : 2009. 7. 21.

❖ 법무법인 렉스

· 대 표 : 우의형 · 안종택 · 김동윤 ·
채정석 · 조대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피런스빌딩 15층

· 탈퇴일 : 2009. 9. 3.

❖ 법무법인 소명

· 대 표 : 전재중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4층

· 탈퇴일 : 2009. 9. 9.

❖ 공증인 이동균

· 소 속 : 대구지검

· 소재지 :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64-13

· 탈퇴일 : 2009. 9. 15.

❖ 법무법인 우현지산

· 대 표 : 김재식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타워 16층

· 탈퇴일 : 2009. 9. 28.

❖ 법무법인 상선

· 대 표 : 손성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4
우성빌딩 1층, 4층

· 탈퇴일 : 2009. 10. 1.

❖ 법무법인 영광

· 대 표 : 김희석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9-3 현타워 201호

· 탈퇴일 : 2009. 10. 6.

❖ 법무법인 청명

· 대 표 : 유승원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614호

· 탈퇴일 : 2009. 10. 30.

❖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임채홍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빌딩 506호

· 탈퇴일 : 2009. 11. 18.

❖ 공증인가 호남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권진욱 변호사

· 소재지 : 광주 동구 궁동 38-8 3층

· 탈퇴일 : 2009. 12. 18.

❖ 한발 법무법인

· 대 표 : 박주봉 변호사

· 소재지 : 대전 서구 둔산동 1389
변호사회관 707호

· 탈퇴일 : 2009. 12. 28.

대한공증협회지

<2010 통권 제3호>

발행일 : 2010년 1월 27일

발행인 : 노 승 행

편집인 : 안 원 모

발행처 : 대한공증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8-1 (변호사회관 403호, 404호)

전화 (02)3477-5007 팩스 (02)3476-5551

<http://www.koreanotary.or.kr>

E-mail : kma@koreanotary.or.kr

제 작 : 디자인수 (1566-5790)

The Journal of Korean Notaries Association

Volume. 3 2010

Published	Jan 27. 2010
Publisher	RHO, Seung-Haeng
Editor	AHN, Won-M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403~404, 1718-1, Seocho3-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 +82-2-3477-5007 Fax : +82-2-3476-5551)